

2024년 성능인증(EPC) 신규신청 접수 공고(제4차)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의 성능을 확보하였음을 확인·증명하여 공공기관의 기술개발제품 구매촉진 및 조달시장 판로 확대를 위해 추진하는 「2024년 성능인증(EPC) 신규신청 접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08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기업유통센터대표이사

1. 성능인증제도 개요

목 적

-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제품이 성능을 확보하였음을 확인·증명하여 공공기관의 기술개발제품 구매 유도 및 중소기업의 R&D 촉진

근거법령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 제15조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방식 : 성능 차별성 검증을 위한 적합성 심사, 공장심사, 성능 검사 등을 통해 성능인증서 발급

지원내용 :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및 공공기관 수의계약 가능

- (우선구매) 판로지원법에 따라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대상에 포함

* 성능인증제품의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요청을 하는 경우,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검토 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우선구매 권고

- (수의계약)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과 수의계약 체결 가능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 제1항제3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제1항제6호

2. 신청 대상

□ 신청 대상제품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기술개발제품 중 아래 기준을 만족하는 제품

* 기 준 :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따른 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 [별표 1]에 따름 (중기부 고시 제2022-1호)

NO	신청 대상제품	관련부처
1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공 판정 받은 과제의 기술 적용 제품	전 부처
2	특허 및 실용신안을 사업화한 제품	특허청
3	우수재활용제품(GR)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4	소프트웨어 1등급 품질인증제품(GS) * 타제품과의 결합·융합 제품만 가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5	조달청 우수조달제품	조달청
6	환경표지인증제품	환경부
7	신제품(NEP)	산업통상자원부
8	신기술(NET) 이용 제조 제품 * 적용 제품 확인서가 발급 가능한 경우에 한함	9개 부처
9	녹색기술인증제품	국무조정실
10	공공기관-중소기업 공동 연구개발 성공제품 (개발선정품 지정)	기획재정부
11	성과공유 기술개발과제(공공부문) 성공 제품	중소벤처기업부
12	국방부 우수상용품 중 공공기관 납품 가능 제품	국방부
13	상생협력제품	중소벤처기업부

□ 신청 대상제품 근거 기술 유효기간

구 분	유효기간
특허 및 실용신안을 사업화한 제품	등록일로부터 특허 7년, 실용신안 5년 이내
유효기간이 별도 지정되어 있는 경우	유효기간 또는 지정기간 내
법률에 근거하여 인증한 제품 (유효기간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	인증획득일로부터 3년 이내
기술개발사업에 의하여 개발된 제품	개발 완료 또는 성공여부에 대하여 서면으로 통지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

□ 신청 불가 품목

- 시행세칙 제6조제10항제5호부터 제6호, 제26조에 따른 품목
 - 의약품(동·식물용 포함), 의약외품, 미생물, 농·수산물, 총포·화약류, 사행성 제품, 비가공제품, 식·음료품(동·식물용 포함)
 - 구성하는 핵심부품 일체가 수입품인 제품 및 독립적으로 성능을 발휘할 수 없는 부품 또는 반제품인 경우
 - 법정 형식승인이 필요한 제품임에도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제품
 - 이미 발급된 성능인증서와 동일한 적용 기술 또는 동일한 규격이나 호칭을 사용한 제품

※ 신청이 반려되는 경우

1. 신청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 서류를 제출한 경우
2. 성능인증 심사를 위해 규정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을 거부한 경우
3. 성능인증 신청자가 부도, 휴폐업 등으로 성능인증 제품 지정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판로지원법 제8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기업이 생산한 제품인 경우
5. 지정받고자 하는 제품이 위 신청 불가 품목에 해당하는 경우

□ 신청서류 목록

구분	신청서류	필수	해당시	비고
적합성 심사 활용	(온라인 입력) 성능인증 신청시 자동 반영	●		
	① 신청 대상 근거기술 관련 증빙서류 [참고1]	●		신규, 연장
	② 성능인증 표준규격서 1부 [서식1]	●		신규, 규격추가
	③ 성능인증 신청제품 규격내용 [서식2]	●		신규, 규격추가
	④ 시험성적서 (3년 이내 발급)	●		신규 (규격추가, 연장 해당 시)
	⑤ 법정 필수 인증, 형식승인 등		●	법적 인증 필요 제품은 제출 필수
	⑥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1부	●		
	⑦ 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 1부 [서식3]	●		
	⑧ 성능인증 공개검증 요약서 1부 [서식4]	●		공개검증 활용(신규)
공장심사 활용	⑨ 규격확인·공장심사 사전조사서 [서식5]	●		신규, 연장 (규격추가 해당 시)
	⑩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신규, 연장
	⑪ 사업자등록증명원		●	신규, 연장
	⑫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신규, 연장
	⑬ 전년도 재무제표		●	신규, 연장
기 타	⑭ 제품 사진	●		
연장심사 필요서류	⑮ 성능인증 기간연장 설명서 1부 [서식6]	●		연장 시 필수
	⑯ 성능인증제품 판매실적 [서식7]	●		연장 시 필수
	⑰ 성능인증제품 판매실적 증빙서류		●	

▶ ②, ③, ⑦, ⑧, ⑨, ⑮, ⑯, 서식 : <참고3> 참조

- ① 규격서 '3. 적용된 기술 > 가. 적용된 기술'의 증빙으로써 제시한 기술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시
- ② (신규) 신청제품 관련 적용기술, 규격, 구조, 구성, 기본성능, 차별성능, 우수성 설명
(규격추가) 추가 하고자 하는 모델 정보를 기존 규격서에 반영하여 제시
- ③ 규격서 '2. 신청제품 개요 > 다. 성능인증 신청 범위'와 동일하게 성능인증을 받고자 하는 모델명, 사이즈, 구성 등을 작성
- ④ 규격서 '4. 제품의 성능 및 우수성'의 증빙으로써 KOLAS(한국인정기구) 시험성적서 제시
* 신청일 기준으로 최초 발급일로부터 3년 이내 발급한 것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
- ⑤ 규격서 '2. 신청제품 개요 > 나. 인용 규격 > 1) 형식승인'의 증빙으로써 신청제품이 국가에서 법적으로 자격(형식승인 등)을 정하고 있는 경우, 해당자격을 획득한 증빙서류를 제시(인증서, 시험성적서 등)
- ⑦ 공개검증 관련 서류로써 공개에 동의할 항목을 선택하여 제시
- ⑧ 공개검증 관련 서류로써 규격서 주요항목을 발췌·요약하여 제시
- ⑨ ~ ⑬ 공장심사 관련 서류로써 공장주소 및 자체평가 점수를 기재하고 관련 증빙 제시
- ⑮ ~ ⑯ 연장 관련 서류로써 연장신청 사유별 심사지표에 부합하는 내용과 증빙 제시

3.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4차) 2024. 10. 14.(월) ~ 2024. 10. 25.(금)

구 분	신청기간	인증서 발급 예정
제1차	2024. 2. 13(화) ~ 2. 21(수)	2024. 6월
제2차	2024. 4. 25(목) ~ 5. 10(금)	2024. 8월
제3차	2024. 7. 15(월) ~ 7. 26(금)	2024. 11월
제4차	2024. 10. 14(월) ~ 10. 25(금)	2025. 2월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공고 예정

* 규격추가, 연장은 수시 신청 가능(단, 연장은 유효기간 만료 전 120일부터 60일 사이 신청 가능)

□ 신청방법 : 공공구매종합정보(SMPP)를 통한 온라인(인터넷) 신청

※ 공공구매종합정보 (<https://www.smpp.go.kr>)



* 규격추가, 연장신청, 정보변경 등의 경우에는 <https://www.smpp.go.kr> → 나의업무 → 성능인증 → 신청내역 → 신청품목명 클릭 → 페이지 하단 "재교부" 클릭

4. 문 의 처

□ 제도 안내 및 문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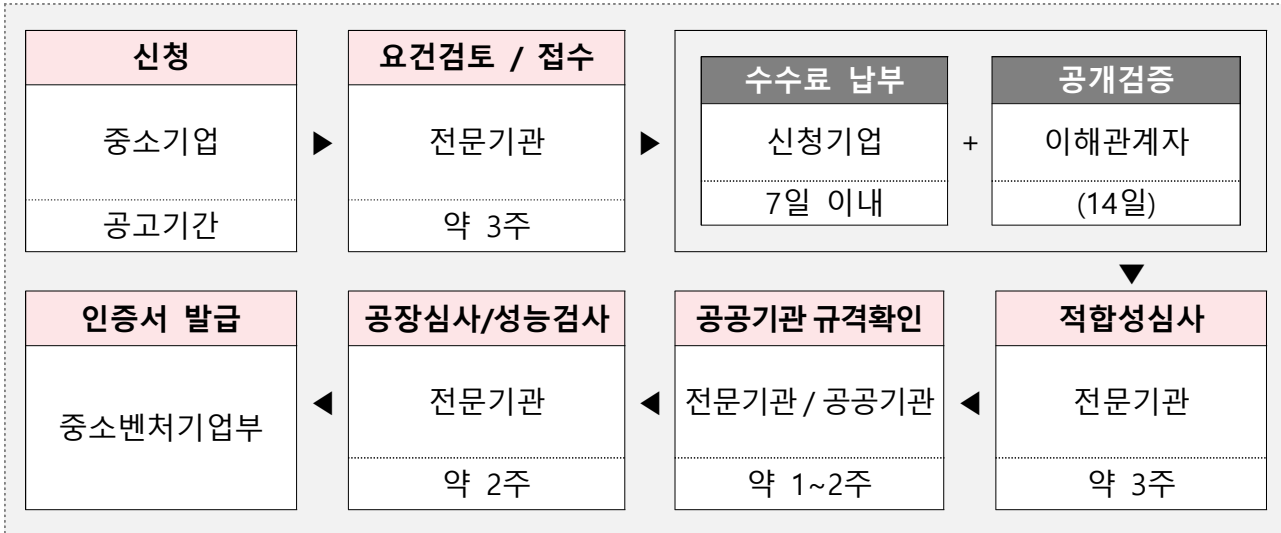
담당기관	문의사항	전 화
전문기관 중소기업유통센터 (성능인증팀)	신청·접수, 심사 일정, 심사기준, 유의사항 등	042-712-5621~5625

□ 홈페이지 안내

구 분	홈페이지	확인 방법
제도 운영	공공구매종합정보망	https://www.smpp.go.kr
	성능인증 정보	SMPP소개 - 중소기업 주요서비스 - 성능인증
	성능인증 신청	로그인 - 나의업무 - 성능인증 - 신규신청
제도 총괄	중소벤처기업부	https://www.mss.go.kr

5. 심사 절차

- ▶ 심사일정은 신청제품 규모 및 방역지침 변경 등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 전문기관의 접수일로부터 인증서 발급기간까지 약 90일 정도 소요



□ 심사 세부 절차

- **(신청)** 신청기업이 성능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술개발제품 관련 신청서류(등록정보, 규격서 및 증빙 등)를 SMPP를 통해 온라인 제출
 - * SMPP > 나의업무 > 성능인증 > 신청내역목록 > 진행단계가 '접수대기중'으로 확인되면 정상 신청 완료
- **(요건검토/접수)** 전문기관이 신청기업이 제출한 신청서와 필수서류 제출 여부 등을 검토하고, 신청기업의 보완을 거쳐 최종 접수 처리
 - * 신청기업의 보완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 의사 피력 시 '접수' 가능
- **(수수료 납부)** 접수 후 발급된 가상계좌로 7일 이내로 입금하여야 하며, 기한 내 수수료가 납부되지 않은 경우 신청 반려
- **(공개검증)** SMPP에 신청기업이 공개에 동의한 정보를 14일간 공개하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적합성심사위원회에 제공
 - * 이해관계자의 의견에 대한 소명 의사가 있는 경우 적합성 심사일 1일 전까지 소명자료 제출

- **(적합성심사)** 신청기업이 제품의 성능차별성, 우수성에 대해 7인 이내의 심사위원이 서면심사하여 70점 이상인 경우 적합

* 원칙적으로 서면 심사하며 필요시 대면심사 진행할 수 있음

** (유의 사항) 신청 시 SMPP에 제출한 신청서류로 심사 진행

구분	적합 판정 기준	참 고
신규	최고·최저점 제외 후 산술평균으로 70점 이상 * 단 위원구성 5인 미만 시, 전체 총합의 산술평균	-
연장		심사 일정 확정 후 1회에 한해 다음 차수로 연기 가능
규격 추가	참석위원 2/3 이상 적합 판정	* 시행세칙 제13조 ②항 근거

- **(공공기관 규격확인)** 신청기업이 제시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신청 제품이 실제 공공기관에서 사용 가능한 규격인지 확인

* 전문기관이 최대 3개 기관, 2회까지 문의하며, 공공기관이 '사용가능' 회신 시 적합

* 공공기관이 규격 확인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까지 회신하지 않은 경우 부적합

- **(공장심사)** 신청제품을 제조하는 공장(사업장 또는 위탁공장 포함)의 기술개발여건, 생산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여 65점 이상인 경우 적합

* 공장심사 일정은 전문기관과 신청기업이 협의하여 결정하며, 성능인증서의 효력은 공장심사를 실시하고 합격한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에만 적용

- **(성능검사)** 신청제품의 성능 우수성을 한국인정기구(KOLAS) 공인 시험기관에서 발급한 시험성적서를 활용하여 확인

* 시험성적서는 신청일 기준 최초 발급일로부터 3년 이내의 것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

- **(인증서 발급)** 모든 심사절차 종료 후 심사 결과를 재확인하고 성능인증 기준에 적합한 경우 SMPP를 통해 성능인증서 발급

* 성능인증 발급을 위한 심사 절차 진행 중이라도 성능인증 부정발급 사유가 발견 되는 경우 해당신청 건을 반려하여 종결 처리

6. 성능인증 수수료

□ 수수료 부과 기준

- 신규신청·규격추가·연장 및 공장추가 또는 주소변경 등으로 심사를 신청한 기업을 대상으로 심사 수수료 부과

- **납부방법** : 전문기관의 접수 처리에 따라 가상계좌가 생성되고, 안내받은 계좌정보를 활용, 수수료를 납부

- **기본 수수료** : 77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업력 7년 이내 창업기업이면서, 소기업(또는 소상공인)인 경우에 한해 20% 할인

< 성능인증 수수료 부과 기준 >

구 분	일반기업		창업기업이면서, 소기업(또는 소상공인) (20% 할인)	
	구 분	심사비용	구 분	세부심사비
심사 단계별 수수료	적합성심사	539,000원	적합성심사	431,200원
	공장심사	115,500원	공장심사	92,400원
	성능검사	115,500원	성능검사	92,400원

※ 기타 할인 : 기간 내 동일한 공장에서 생산되는 2개 이상 제품을 신청한 경우 1개 제품 20% 할인
 ※ 수수료 부과 : 심사 수수료는 각 단계 심사별로 부과 받을 수 있음

□ 수수료 납부 관련 유의사항

- 수수료 납부 후 세금계산서는 익월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 (발급기관 : 중소기업유통센터)
- 전문기관이 정한 기한 내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해당 공고에 따른 심사 절차는 참여 불가하며,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간주하여 접수를 반려하여 종결 처리(심사 연기 불가)
- 수수료 납부가 확인된 제품에 한해 적합성심사 분과를 구성하며, 적합성심사 일정이 확정된 이후에 성능인증 신청의사를 철회하거나 적합성심사를 실시한 경우 적합성심사 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음
- 제품 생산공장이 국외에 있는 경우, 전문가 1명 및 전문기관 담당자 1명으로 구성된 심사단이 현지에서 공장심사를 진행하며 소요 여비는 신청기업이 부담

7. 유의사항

□ 적합성심사 시 유의사항

- '24-4차 공고 적합성심사는 서면 또는 대면으로 실시
- 서면 심사 시, 기업은 적합성심사위원회에 참석하지 않고, 신청 시 SMPP에 제출한 신청서류로 적합성심사위원회에서 심사 진행
- 대면 심사 시, 신청기업은 적합성심사위원회에 참석하여 규격서 (신규, 규격추가) 또는 기간연장 설명서(연장)로 발표하여야 하며, 별도 발표 자료(PPT 등) 허용되지 않음
 - 발표 시간은 20분, 질의응답 25분으로 진행
 - 심사 발표자 및 참석자는 본 공고 시작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전 입사자에 한하며, 4대보험 가입자 명부로 확인함
 - * 적합성심사 당일 확인하여 참석자의 자격 미달 시 심사장 내 입장 불가
- 신청 마감일 이후 발급된 서류는 제출하여도 인정 및 활용 불가
- 적합성심사 결과는 전체 적합성심사 기간의 종료 후 확인 가능하며, 적합 여부에 대하여 일괄 통보 예정
 - * 심사기간 내 개별 기업의 심사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 신청 및 발급 유의사항

- 신규 신청은 회차별 신청기간 동안에만 신청이 가능하며,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을 통한 온라인 접수만 가능
 - 온라인 신청 시 신청내용과 관련 서류를 첨부하고 '신청' 버튼을 클릭하여 최종 '접수대기중' 상태인 경우만 신청된 것으로 인정
 -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회차별 신청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에 한해 인정되며, 신청마감일 이후 발급된 서류는 심사 시 불인정
 - 출원 중인 특허, 발급 전인 인증, 완료·성공 판정 전인 기술개발 제품 등 확정되지 않은 신청 대상제품 근거기술은 활용 불가

- 전문기관은 신청 내용과 서류 검토 후 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접수 이후에는 서류의 수정·보완·추가 불가
 - 전문기관의 보완 요구 사항에 대해 신청업체가 기간 내 보완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보고, 반려 처리
- 성능인증 신규 신청 외 연장, 규격추가, 재교부(공장주소 변경, 양도·양수, 대표자 변경 등)는 수시로 온라인 신청 가능
 - * 수시로 접수된 건은 신규 신청 건과 같이 분과를 구성하여 심사 진행
- SMPP에 등록된 정보와 제출서류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 심사 시 지적 대상이 되어 부정적인 결과를 받거나 발급이 지연되는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으니 유의
- 본 공고 신청 건으로 SMPP에 제출한 신청서류만 심사 시 활용
 - 심사는 독립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본 공고 이전에 제출한 서류와 본 공고에 제출한 신청서류 간 제출 여부를 혼동하지 않도록 유의
 - * 본 공고 신청 건에서 제출하지 않은 서류는 미제출로 처리
 - 규격추가 및 연장은 해당제품의 신규 및 기타 신청 건 처리 시 제출하였던 신청서류도 심사 시 활용 가능
 - * 신청취소 건 및 부적합 판정 건은 활용 대상에서 배제
- 성능인증 처리기간은 전문기관의 접수일로부터 90일 정도 소요되며, 상황에 따라 일정이 다소 변경 가능

□ 연장 유의사항

- 연장심사는 정기 심사(연 4회) 일정에 맞춰 진행
- '연장'은 유효기간 만료 전 120일부터 60일 사이에 신청해야 하며, 신청기간 경과에 따른 불이익은 신청기업에 있음

□ '성능인증 신청 시 필수 확인사항(별첨)'을 반드시 숙지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1

신청 대상제품 근거기술 증빙서류

구 분	신청 대상제품	근거기술 증빙서류
R&D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공 판정 받은 과제의 기술 적용 제품	최종평가 결과 안내문, 최종보고서
특허·실용신안	특허 및 실용신안을 등록하고 사업화한 제품	특허(실용신안)증, 등록원부, 등록특허(실용신안)공보
우수재활용 제품	우수재활용품으로 인정되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 원장으로부터 우수재활용(GR)마크를 획득한 제품	GR인증서 GR적용제품 확인서, GR 종합평가보고서
GS제품	1등급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제품(GS)	GS인증서, GS 취득 시 제출한 기술관련 최종자료
조달 우수제품	조달청장이 지정한 우수조달제품	우수조달제품 지정서, 우수조달 취득 시 제출한 기술관련 최종자료
환경표지 제품	환경표지인증제품	환경표지인증서, 환경표지 취득 시 제출한 기술관련 최종자료
신제품	신제품(NEP)으로 인증 받은 제품	NEP인증서, NEP 취득 시 제출한 기술관련 최종자료
신기술 적용제품	신기술(NET)를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임을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 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이 확인한 제품	NET인증서, NET적용제품 확인서, NET 취득 시 제출한 기술관련 최종자료
녹색인증 제품	녹색기술인증이 적용된 제품	녹색기술인증서 녹색제품 확인서, 기술종합 평가보고서
개발선정품	공공기관에서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추진한 연구개발 성공 제품 중 '개발선정품'으로 지정된 제품	공공기관 지정서, 최종보고서
성과공유과제 성공제품	성과공유 기술개발과제(공공부문)로 등록되어 기술개발에 성공한 제품	성공판정 공문, 최종보고서
국방부 우수상용품	국방부 선정 우수상용품 중 공공기관 납품 가능 제품	우수상용품 지정서, 최종보고서
상생협력 제품	상생협력제품 (판로지원법 제20조의2)	상생협력확인서, 상생협력제품설명서, 상생협력 취득 시 제출한 기술관련 최종자료

* 성능인증 신청제품은 인증서를 통해 명시적으로 표시된 제품에 한함

** 근거기술 적용여부 판단을 위해 (인증서, 공문 등)외 기술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상세서류 (최종보고서, 평가보고서 등) 제출 필요

성능인증 적합성 심사표(신규신청)

1. 성능인증 신청정보

접 수 번 호		신 청 기 업 명	
제 품 명			
적 용 기 술 명			

2. 적합성 심사표

항 목		심 사 기 준	배점	평점												
기술성 (30)	기술 반영도	- 성능인증 신청제품이 근거기술에 적용된 기술을 반영하고 있는가? (부적합 시 탈락) - 신청제품의 생산방법 및 원리가 타 기업 및 기술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는 없는가?	15													
	기술적 객관성	- 제시된 규격과 성능이 객관적인 시험성적서 등의 데이터를 통해 합리적으로 증명되는가? 성능기준 및 시험방법이 신청제품의 우수성 및 기술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국내(국제)표준보다 높게 설정되어 있는가? (부적합 시 탈락) - 연속된 다양한 규격으로 성능인증을 신청한 경우, 최대·최소·중간규격 제품에 대한 시험성적서가 제시되어 성능의 연속성을 증명하고 있는가? - 형식승인이 필요한 제품인 경우 형식승인을 확보하고 있는가? (부적합 시 탈락)	15													
성능 차별성 (20)	성능 우수성	- 제시된 성능이 표준 또는 유사 제품보다 차별적으로 우수한가? - 신청제품의 기술이 특히 우수하여 일반제품보다 성능이 차별된 제품인가? - 신청제품이 동일한 기술이나 규격으로 성능인증 또는 타 인증으로 발급받은 이력이 없는가? (있는 경우 감점 요인)	15													
	난이도	- 신청제품의 성능을 타 기업이 쉽게 모방할 수 있는가? * 2년 이상 (5점), 2년 미만 (4점), 1년 이내 (3점), 6개월 이내 (2점), 3개월 이내 (1점)	5													
경제성 평가 (30)	가격 경쟁력	- 기존 유사 제품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있는가? * 산출식=((기존 유사제품 평균가격 - 신청제품 가격) / 기존 유사제품 평균가격) × 100 <table border="1" style="margin: 5px auto; text-align: center;"> <tr> <td>미 제시</td> <td>0% 이하</td> <td>3% 미만</td> <td>3% 이상 ~ 6% 미만</td> <td>6% 이상 ~ 10% 미만</td> <td>10% 이상</td> </tr> <tr> <td>0</td> <td>2</td> <td>4</td> <td>6</td> <td>8</td> <td>10</td> </tr> </table>	미 제시	0% 이하	3% 미만	3% 이상 ~ 6% 미만	6% 이상 ~ 10% 미만	10% 이상	0	2	4	6	8	10	10	
	미 제시	0% 이하	3% 미만	3% 이상 ~ 6% 미만	6% 이상 ~ 10% 미만	10% 이상										
	0	2	4	6	8	10										
경제적 파급력	- 타 공공부문 또는 민간영역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높은 제품인가? -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이 신청제품 구매를 통해 비용절감 등 경제적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가?	10														
시장규모	- 해당 제품을 통해 신규시장의 창출이 가능한가? (기존 시장이 있는 경우 점유율 확보여부) - 시장규모에 대한 객관적 데이터가 제시되는가?	10														
공공시장 적합성 (20)	공공성	- 신청제품은 성능인증을 통해 공공시장에 통용될 수 있는 제품임이 확인되는가? (부적합 시 탈락) - 신청제품이 국민생활 향상, 사회안전 해결, 공공경영 개선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큰가? -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사실이 객관적 데이터로 증명되는가?	10													
	안정적 생산능력	- 공공기관 대량납품 등 안정적인 생산역량을 보유하고 있는가? - 공공기관 납품 후 사후관리, 하자이행보증 등 품질유지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가?	10													
총 점																

3. 심사의견

년 월 일

심사위원 (소속)

(성명)

(서명)

참고3**성능인증 신청서류 서식**

[서식1] 성능인증 표준규격서

「성능인증제품」 표준규격서

제 품 명	
제 출 일 자	20

제 출 자	
-------	--

문서번호: (사내 문서 등록 번호)					
제정일자		제정자		비고	
제정일자		제정자		비고	
제정일자		제정자		비고	

1. 신청제품명

가. 국문

나. 영문

작성요령

(작성 완료 후 삭제 요망)

- 성능인증 규격서는 공공기관이 구매하고자 하는 개발제품의 규격, 조건에 만족해야 하므로 KS규격, 단체표준 규격 등을 참조하여 최소한 다음의 규격서 형식에 맞도록 작성
 - 구매 공공기관이 요구한 제품규격 또는 신기술인증제품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함
 - 성능인증 시험항목의 기준치는 국제, 국내(KS규격 등) 표준 기준보다 높게 설정되어야 함
 - 적용된 신청기술(특허 등)이 성능 지표에서 정량적 기준으로 제시되어야 함

작성요령

(작성 완료 후 삭제 요망)

- 성능인증을 신청제품의 명칭을 국문, 영문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심사시 수정 요청 될 수 있음
- 제품명은 기술적 내용을 포함한 명칭을 사용하여 제품의 특징과 고유성을 확보하여야 함
- 기존 발급된 성능인증 제품과 동일한 제품명은 기재할 수 없음

2. 신청제품 개요

가. 적용범위

1) 적용범위

작성요령

(작성 완료 후 삭제 요망)

- 제품의 안정 및 성능요구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는 내용을 기술
 - * (예시) 이 규격은 ~에 사용하는 ~제품에 대하여 규정 함

2) 용어의 정의

작성요령

(작성 완료 후 삭제 요망)

- 신청 제품 규격에서 사용되는 주된 용어와 정의를 제시
 - * (예시) 정격전압 : 사용의 기준이 되는 소비전력으로 전구에 표시된 소비 전력

나. 인용 규격

1) 형식승인

작성요령

(작성 완료 후 삭제 요망)

- 제품 생산 및 판매를 위해 받아야 하는 필수/임의 형식승인을 표시
- 법적 근거와 형식승인의 규격을 설명
- 필수인증인 경우 미작성 시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음

2) 신청제품의 규격

작성요령

(작성 완료 후 삭제 요망)

- 제품에 나타나는 규격에 인용됨으로써 이 규격의 규정 일부를 구성한다. 인용규격은 그 최신판을 적용
 - * (예시) KS D 5201, 동 및 동합금의 판 및 띠 등
- 수요처의 규격이 있는 경우 표시하되, 별도 규격이 없는 경우 제품 자체의 규격을 제시

다. 성능인증 신청범위

작성요령

(작성 완료 후 삭제 요망)

- 성능인증에 필요한 제품의 종류(옥내용, 옥외용) 및 규격(치수 등)에 대하여 분류
- 신청제품의 범위 또는 모델명을 기재
 - (종류 및 규격에 따라 인증 범위가 결정되므로 신중한 기재 필요)
- S/W제품의 경우 소프트웨어가 적용되는 하드웨어를 포함한 전체 시스템을 기재

라. 제품의 구성 및 구조

작성요령

(작성 완료 후 삭제 요망)

- 신청제품의 사진, 구성도를 첨부하고 각 구성품의 기능을 표시
- * (예시) 도입선과 필라멘트 및 도입선과 램의 접속은 확실하게 되어 있어야 함

마. 제조 및 가공방법

1) 제조 및 가공방법

2) 재료

작성요령

(작성 완료 후 삭제 요망)

- 제품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제조 및 가공방법에 대한 설명을 기재
- 재료(부품 및 부속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 기재
- * (예시) 필라멘트는 KSD5542에 규정된 텅스텐 선을 사용하여야 함

바. 마감 및 외관

1)

작성요령

(작성 완료 후 삭제 요망)

- 제품의 생산 과정에서 마감 원칙을 설명
- * (예시) '안정하도록 설계, 제조되어야 한다' '외관에 균열, 흠이 없어야 한다' 등

사. 포장 및 표시

작성요령

(작성 완료 후 삭제 요망)

- 포장 :포장방법을 기술하고 제품의 외부면에 명판, 각인 등의 표시사항을 기재

3. 적용된 기술

가. 적용된 기술

1) 적용기술

근거기술명	특허명(10-0000000), R&D성공과제명, 국가인증	
주요기술명 (특허청구항 등)	신청제품 적용내용 (적용제품 부분)	비고
(과제 최종보고서)	(적용제품 부분)	

○

○

작성요령 (작성 완료 후 삭제 요망)

- 성능인증 신청 근거기술로서, 별표 1에 해당되는 제품에 적용된 기술을 기재

2) 사업화 근거

○

○

작성요령 (작성 완료 후 삭제 요망)

- 성능인증 신청제품에 근거기술이 반영된 내용 및 정도, 근거 및 결과를 제시

나. 동종업계와의 제품 기술 수준

1) 동종업계의 국내·외 기술수준

2) 신청제품의 기술수준

작성요령

(작성 완료 후 삭제 요망)

- 신청제품의 유사 제품군의 국내 최고수준 및 세계 최고수준 등에 대한 시장조사를 토대로 기술적 성취도를 제시
- 신제품의 경우에는 유사 제품을 제시하거나 기술적 완성도를 설명

4. 제품의 성능 및 우수성

가. 성능기준 및 시험항목

1)

2)

작성요령

(작성 완료 후 삭제 요망)

- 적합성 심사 시 중요한 부분으로서, 성능검사시 공인시험성적서로 확인하는 항목이므로 작성 및 근거자료 마련에 유의해야 함

(예시)	시험항목	기 준	적용 시험 방법
	소비전력	소비전력은 163W 이하일 것	1) 시험방법 적용
	내열 시험	시료를 200± 3℃ 에서 8시간 방치 후 동작에 이상이 없을 것	2) 시험방법 적용
	정격 소비 전력	38W ± 10% 이내 일 것	3) 시험방법 적용
	방수시험	시험 후 기기내부에 정상적인 작동을 저해하는 침수가 없을 것	4) 시험방법 적용

- 신청제품이 유통·판매되기 위한 일반적인 시험항목과, 제품의 우수성을 입증할 수 있는 시험항목을 구분하여 기재
 - ① 제품이 갖춰야 할 최소한의 기본사항
(KS규격 및 형식시험 등, 신청제품의 성능기준과 비교하기 위한 기초자료)
 - ② 신청근거와 관련된 우수성을 나타낼 수 있는 기준
(국제, 국내 표준규격보다 높은 기준을 제시하여야 하고, 성능인증 발급 후 최종적인 성능기준이 되는 자료)
- 신청근거의 우수성을 정량적인 기준으로 제시하여 증명하여야 함
- 규격서는 기술을 모르는 공공기관이 볼 수 있으므로, 시험방법은 상세하게 기재하여야 함
(단순히 'KS규격에 따른다'는 내용은 작성할 수 없음)

(예시)

- 1) 소비전력 시험
 - 시험방법 상세기술
- 2) 내열 시험
 - 시험방법 상세기술
- 3) 정격소비전력 시험
 - 시험방법 상세기술
- 4) 방수 시험
 - 시험방법 상세기술

- 규격화된 시험항목이 없을 경우에는 “의뢰자 제시방법” 또는 “제조사 제시방법” 으로 작성
- S/W 제품의 경우 시험환경 구성 현황에 대해 작성하고, 환경구성도 및 각 H/W별 설치 프로그램 및 구성현황을 설명

나. 제품의 성능

1)

2)

작성요령

(작성 완료 후 삭제 요망)

- 신청제품의 특징(신청근거와 관련된 우수성)을 정성적 및 정량적으로 기재하고, 위 '가'의 성능기준에 부합되는 정량적인 기준을 제시
- 적합한 시험방법에 따른 시험성적서 기록을 기준으로 제품의 우수성을 설명하고, 유사제품 또는 일반화된 제품과의 정량적 비교검토를 통해 신청제품이 우수한 성능을 발휘함을 설명
- S/W 제품의 경우 적용한 시스템과 GS성적서 상의 기능설명을 상세히 기록
* 품질특성, 부특성, 설명, 결함여부 등 GS성적서 상의 시험규격서 제시

5. 제품의 시장성

가. 향후 제품의 성장가능성

1) 신청업체 제품의 시장 점유율 예상

구 분		전년도	금년도	차기년도(예상)
국내시장	시장규모			
	점유율 (금액:천원)			
세계시장	시장규모			
	점유율 (금액:\$)			

작성요령

(작성 완료 후 삭제 요망)

- 국내·외 시장규모에 대한 분석은 신뢰도 있는 외부 기관이 발간한 보고서, 통계자료 등 객관적 데이터를 중심으로 제시
- 점유율에 대한 분석은 최대한 객관성 있게 작성하여 성장 가능성을 제시

2) 제품의 공공시장 적합성

작성요령

(작성 완료 후 삭제 요망)

- 성능인증 신청제품의 시장성 및 경쟁력에 대해 객관적 수치를 근거로 소명
- 성능인증서 발급 후 공공시장에서 기대되는 매출효과 및 국민생활 향상, 사회안전 해결, 공공경영 개선 등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제시

3) 가격 경쟁력

작성요령

(작성 완료 후 삭제 요망)

- 원가계산을 실시하는 등 제품 생산 비용을 객관적으로 산출하고, 타당성 있는 사유로 유사(경쟁) 제품으로 지정한 타 제품과의 비교를 통한 경쟁력을 제시
- 가격경쟁력을 입증할 수 있는 원가분석, LCC 자료 등을 제출하여 객관성을 입증

나. 하자보증 방법 및 기간

작성요령

(작성 완료 후 삭제 요망)

- 납품대상 공공기관의 요청 또는 국가계약법이나 지방계약법에 의한 하자이행보증 등 성능인증제품의 공공기관 납품 후 AS기준 및 방법에 대해 제시

6. 신청업체 보유역량

가. 연구개발 자원

1) 신청업체 연구개발 환경

작성요령

(작성 완료 후 삭제 요망)

-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조직도 상의 연구개발팀 등 조직 측면의 역량을 기재
- 보유 장비, 장소 등 환경적 역량 및 신청제품의 안정적 생산역량을 기재

2) 신청업체 연구개발 인력현황

작성요령

(작성 완료 후 삭제 요망)

- 연구개발 환경과 연계하여 연구인력의 수 및 연구인력의 경력 등 인적 역량을 제시
* 인력보유 비율 : 연구개발 전담인력 / 상시종업원 수 * 100

3) 신청업체 연구개발 투자 현황

작성요령

(작성 완료 후 삭제 요망)

- 재무제표 상 연구개발에 투자하는 신청기업의 재정적 지원 현황을 제시
* 연구개발 투자비율 : 기술개발비 / 매출액 * 100

나. 신청제품 관련 지식재산권 보유현황

구 분	출원/등록번호(일자)	제 목	출원/등록
특 허			
실용신안			
디자인			
S/W			
...			
...			

작성요령

(작성 완료 후 삭제 요망)

- 신청제품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특허 등 지식재산권 보유현황을 기재

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이력

주무부처	사업명	과제명	수행기간	성공여부
중기부				
산업부				
국토부				
...				
...				

작성요령

(작성 완료 후 삭제 요망)

- 신청제품 관련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 기재

7. 신청업체 일반현황

가. 신청기업 기본정보 및 영업현황

업체명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종업원수		자본금	억원
주생산품			
총 매출	(직전년도) 억원 (금년실적, 계획) 억원	총 수출	(직전년도) 백만\$ (금년실적, 계획) 백만\$
신청제품 매출	(직전년도) 억원 (금년실적, 계획) 억원	신청제품 수출	(직전년도) 백만\$ (금년실적, 계획) 백만\$
주거래처		신청제품 주 수요처	
동종업체			
신청제품 인증현황(NEP, NET 등)			
동일 품목 타사제품의 기인증 여부			

작성요령 (작성 완료 후 삭제 요망)

- 신청기업의 기본정보를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최신의 재무제표 등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토대로 최신화하여 작성

나. 신청기업 인증보유 현황

인증명	제품명	적용기술 (기술 번호)	인증번호	인증기간
성능인증				
NEP				
우수조달				
...				

작성요령 (작성 완료 후 삭제 요망)

- 신청기업이 발급받았던 각종 인증의 제품명 및 적용기술, 적용기술번호, 인증번호, 인증 기간 등을 기록

[서식3] 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

성능인증 관련 정보 제공 활용 동의서 및 서약서

1. 성능인증을 신청함에 있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신청하며, 인증 받은 후 관련 규정에 따라 운영할 것을 서약합니다.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귀 사의 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를 받고자 하며, 다음의 신용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업자, 신용정보 제공이용자 등에게 제공하여 귀 사의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거나 정책 자료로 활용하는데 동의합니다.
 - 개인식별 정보 (업체명, 대표자명, 담당자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이메일 등)
 - 업체의 재무정보
 -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업체의 정보
4. 성능인증 신청과 인증 발급 후 수사기관(검찰, 경찰, 감사원, 법원 등)이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자료 요청이 있는 경우 귀 사가 제출한 자료와 심사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음에 동의하며, 귀 사의 귀책 사유에 의해 성능인증과 관련한 피해가 발행하는 경우 귀 사에서 모든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5. 성능인증제도에 참여함에 있어 신청, 참여 이력 및 성능인증서, 표준규격서, 종합 보고서 등을 관련기관에 공개할 수 있음을 동의합니다.
6.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 제6조의3(신청 제품의 공개검증)에 따라 귀 사가 동의하는 신청 내용 및 서류를 구매정보망을 통해 공개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동의(☑체크)	<input checked="" type="checkbox"/> 공개검증 요약서(필수) <input type="checkbox"/> 시험성적서 <input type="checkbox"/> 근거기술자료 <input type="checkbox"/> 제품이미지
---------	--

상기 내용을 확인하고, 관련 사항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상기 내용을 숙지하고 신청함에 따라 신청 및 정보 제공 활용 동의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업 체 명 : (인)

대표자명 : (인)

전문기관장 귀하

[서식4] 성능인증 공개검증 요약서

성능인증 공개검증 요약서

제 품 명		모 델 명	model-001 외 0 종
신 청 기 업		대 표 자	

제품의 일반적 용도 및 기능																					
제품의 특징																					
<p>성능인증 신청제품의 특징, 우수한 성능을 기재 (사진 필수)</p> <p>①</p> <p>②</p> <p>③</p>																					
제품에 적용된 기술 내용																					
<p>신청 제품에 적용된 기술을 설명하되, 성능인증 신청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기술임을 표시</p>																					
일반 제품과 대비되는 차별적 품질·성능																					
<p>신뢰성있는 성능 유지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제시(인증, 시험성적서 등) 성능인증 신청 시 제출한 규격의 특징을 표시</p>																					
신청 모델(규격)																					
<p>다수 제품의 성능인증을 신청한 경우 대표 모델과 나머지 모델의 차이점 표시</p> <p style="text-align: center;"><예시></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20%;">모델명</th> <th style="width: 20%;">크기</th> <th style="width: 20%;">재질</th> <th style="width: 20%;">용량</th> <th style="width: 20%;">비고</th> </tr> </thead> <tbody> <tr> <td>A001</td> <td></td> <td></td> <td></td> <td>대표모델</td> </tr> <tr> <td>A002</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A003</td> <td></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모델명	크기	재질	용량	비고	A001				대표모델	A002					A003				
모델명	크기	재질	용량	비고																	
A001				대표모델																	
A002																					
A003																					

* 공개검증 주요내용은 4~5페이지 내외로 분량을 조절

[서식5] 공장심사·성능검사 관련 사전조사서

성능인증 규격확인 및 공장심사 관련 사전 조사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 자료는 적합성심사 결과 적합으로 판정된 제품을 대상으로 다음 심사(규격확인, 공장심사, 성능검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제출 받는 것으로 심사 진행시에만 활용됩니다. 						
신청기업명		작성자 성함				
연락처		이메일				
<p>중소기업유통센터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및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에 따라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p>						
<p>< 적합성심사 개최 후 심사 절차 안내 ></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150px; margin: 5px auto;"> <p style="text-align: center;">적합성 심사 (발표 또는 서류심사)</p> <hr style="border: 0; border-top: 1px solid black;"/> <p style="text-align: center;">대면 또는 서면평가</p> </div>	<p>▷ 적합</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150px; margin: 5px auto;"> <p style="text-align: center;">공공기관 규격확인 (업체 희망기관)</p> <hr style="border: 0; border-top: 1px solid black;"/> <p style="text-align: center;">전문기관 → 기관 요청</p> </div>	<p>▷ 적합</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150px; margin: 5px auto;"> <p style="text-align: center;">공장심사·성능검사 (공장 방문)</p> <hr style="border: 0; border-top: 1px solid black;"/> <p style="text-align: center;">심사위원 현장점검</p> </div>	<p>▷ 적합</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150px; margin: 5px auto;"> <p style="text-align: center;">인증서 발급 (SMPP)</p> <hr style="border: 0; border-top: 1px solid black;"/> <p style="text-align: center;">중기부 → 중소기업</p> </div>
공공기관 규격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합성심사 개최 결과 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신청 제품의 규격, 조건이 공공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규격인지 확인하여 사용가능 여부에 대한 적합 판정 (연장은 생략) - 신청 기업이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에 신청 당시 작성한 규격확인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전문기관(중소기업유통센터)이 공문을 통하여 규격 확인 절차를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 신청시 규격확인 희망하는 구매예상 공공기관을 1개~3개 작성하여 기 제출 ○ 규격확인 은 최대 3개 기관을 대상으로 하며, 2회까지 실시 가능하고, 공공기관이 14일 이상 회신하지 않은 경우 규격 확인 실패로 간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격확인 회신이 오지 않는 경우 2회차 공공기관 목록을 요청할 수 있음 						
공장 주소 및 자체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격확인 결과 사용가능으로 판정된 경우 공장심사와 성능검사를 실시하며, 공장심사표에 따른 기업의 자체심사 결과 65점보다 미달인 경우 심사 보류 요청 가능 <공장심사 주소 및 자체평가 점수> 						
공장 주소 (SMPP에 기재한 주소 입력)		자체평가 점수				
(00000) 대전 서구 청사로 152		100점				

[서식6] 성능인증 연장 신청서 및 기간연장 설명서

성능인증 연장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신청인	업체명(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제조공장 소재지		전화번호	
인증 제품	인증제품명			
	규격 또는 호칭			
	인증번호		인증유효기간	
연장 신청 사유	<input type="checkbox"/> 제품 상용화 지연으로 판매 부진 <input type="checkbox"/> 기술개발제품의 경쟁력 인정 <input type="checkbox"/> 시장형성 미흡으로 사장될 우려 * 신청사유는 한가지만 선택			
납품 실적	등	개	공공기관, 건,	억원 계약 체결
	등	개	공공기관, 건,	억원 납품 완료
공장 현황	자본금		연간매출액	
	백만원		백만원	
	연구개발비		설비자동화율	
	연간	백만원	%	
성능 담당	직위	성명	자격 구분	자격번호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성능인증을 연장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문기관장 귀하

첨부서류	1. 성능인증 기간연장 설명서 1부 2. 성능인증 연장신청 관련 각 증빙자료 3. 성능인증제품의 공공기관 판매실적 1부 (별지 제5호 서식)
------	--

성능인증 기간연장 설명서

1. 성능인증 제품정보

업 체 명		대 표 자	
제 품 명			

2. 성능인증 기간연장 신청 사유 (한가지만 선택)

유효기간 연장 사유	선택	희망기간
제품상용화 지연으로 제품이 판매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년 <input type="checkbox"/> 2년 <input type="checkbox"/> 3년 <input type="checkbox"/> 4년
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시 기술개발제품으로서 경쟁력이 인정되는 경우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년 <input type="checkbox"/> 2년 <input type="checkbox"/> 3년 <input type="checkbox"/> 4년
인증 종료 시까지 제품의 시장형성이 미흡하여 사장될 우려가 있는 경우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년 <input type="checkbox"/> 2년 <input type="checkbox"/> 3년 <input type="checkbox"/> 4년

3. 성능인증 연장 사유

가. 성능인증 참여 성과

○

나. 연장이 필요한 사유

○

다. 향후 사업계획

○

작성요령

(작성 완료 후 삭제 요망)

- 상용화 지연으로 판매 부진 : 기술개발제품의 성능인증 취득 후에도 판매가 부진하여 성능인증으로 보호할 필요성이 인정됨을 설명
- 기술개발제품의 경쟁력 유지 : 최초 성능인증 발급 당시 인정되었던 기술개발제품의 우수성이 연장을 신청한 현재까지도 유지되어, 유사 또는 경쟁제품군에 비해 기술적·경제적 우위가 여전히 인정됨을 객관적 비교 데이터 등을 제시하여 설명
- 시장형성 미흡으로 사장 우려 : 기술개발제품의 우수성을 입증하고 성능인증 취득 후에도 시장이 확대되지 아니한 사실 및 사장될 경우 파급효과에 대해 객관적 지표를 제시하여 설명

[서식기] 성능인증제품 판매실적

성능인증제품 판매실적

1. 일반현황

* 성능인증 기간동안 연도별로 작성

제 품 명												
인 증 번 호					인 증 기 간							
업 체 명					대 표 자							
본 사 주 소												
종 업 원 수	임원 명		사무직 명		기술직 명		기타 명		합계 명			
주 생산 품					자 본 금	억원						
총 매 출	(연도)			억원	총 수 출	(연도)				백만\$		
				억원						백만\$		
				억원						백만\$		
신 청 제 품 매	(연도)			억원	신 청 제 품 출 수	(연도)				백만\$		
				억원						백만\$		
				억원						백만\$		
기타인증현황	(NEP, NET 등)											
주 거 래 처												

2. 판매실적

※ 성능인증 기간동안 연도별, 판매기관별로 작성(성능인증제품에 한함)

판매연도	판매기관	수량	금액(천원)	비 고

첨부서류	실적에 대한 증빙자료 (계약서, 계산서 등)
------	--------------------------